

밥만 먹고 살던 시대는 지났다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소비자 욕구의 현황 및 전망(下)-



김창민박사 · 동원식품연구소 소장

I. 서론

II. 우리나라 인삼산업 현황

III. 인삼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1

IV. 결론

(3) 중국의 건강식품

중국 「식품위생법」 제22조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식품에 대해서 제품과 설명서는 지방보건행정부에 의해 평가 및 인정이 되어야 한다. 위생기준과 이러한 제품의 제조·판매관리는 지방보건행정부에 의해서 공식화된다.”는 내용이다.

동법 제23조에 의하면 이런 식품들은 “인간의 보건에 위협하지 않아야 하고, 제품의 사용설명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제품의 기능이나 성분, 사용설명은 반드시 서로 일치하며 허위내용이 없어야 한다.” 이 법의 제45조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받게 되는 법률적인 의무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위임에 따라 보건부는 1996년에 건강식품관리

를 위한 규칙을 공포했다. 이 법에 의하면 건강식품은 ‘특별한 기능을 가진 식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건강식품은 특별한 집단의 사람들이 소비하는 데 적합한 것이고 인간의 신체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지는 않는 것이다.

현재 이용가능한 과학적인 자료나 방법을 기초로 하여 기존의 건강식품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중국 보건부는 전문가집단이 초안을 작성한 건강식품의 기능에 대한 평가절차와 검사방법을 1996년에 개정했다. 또한 건강식품의 과학적 검사와 표준화를 위하여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건식품의 기능에 대한 평가절차와 검사방법’에 관한 초안을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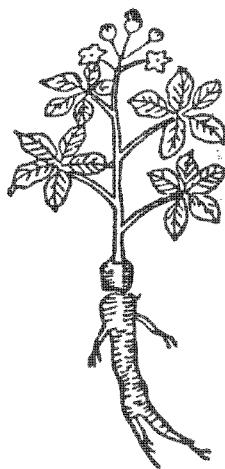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건강보조식품은 일본의 건강보조식품협회에서 운영하는 품질인증제도에 따라 인정된 '건강식품'을 주로 반영한 것으로서, '건강식품'과는 별도로 일본 후생성에 개별허가하는 제품인 '특정 보건용식품(기능성 식품)' 및 미국의 '식이보조제'를

년에 작성하였으며 1998년에 수정·발표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인체섭취시험을 위한 규칙과 절차를 언급하고 다음과 같은 23가지 기능성에 대한 시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① 면역조절기능, ② 노화방지, ③ 기억력 향상, ④ 성장 및 발달촉진, ⑤ 피로방지, ⑥ 비만완화, ⑦ 산소결핍 방염제, ⑧ 항방사선성, ⑨ 항돌연변이성, ⑩ 혈중 지질 조절, ⑪ 성기능 향상, ⑫ 혈당조절, ⑬ 소화장기능 향상, ⑭ 수면개선, ⑮ 영양성 비혈 개선, ⑯ 화학적 손상에 의한 간장보호, ⑰ 수유촉진, ⑱ 미용개선, ⑲ 시력향상, ⑳ 납제거 촉진, ㉑ 인후열 제거 및 습윤, ㉒ 혈압조절, ㉓ 골밀도 향상.

(4) 대 만

1999년 이전까지 대만은 건강식품의 단독관리법이 마련되지 않아 검증되지 않는 제품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대만 정부는 1999년 2월 3일 「건강관리법」을 제정·공포하고 8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가면서 시장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9년 8월 3일부터 건강식품은 「건강식품관리법」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건강식품이란 '특수한 영양소'나 '특별한 보건기능을 구비' 하 고 있으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식품을 지칭하고 있다.

포장지에 '건강식품'이라는 말이 특별하게 없어도 식품포장지나 광고에서 '특수한 영양소를 제공한다'거나 '특별한 보건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으면 모두 「건강식품관리법」의 관리대상으로

적용받게 되어 있다.

「건강식품관리법」이 정식 시행된 이후 대만 위생성은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건강식품의 광고는 예를 들면 질병예방, 생리적 구조·기능에 미치는 영행 등 보건부가 허락한 범위에서 가능하다.

(5) 우리나라

기능성 식품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기능성 식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다만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이른바 건강지향적인 식품에 대한 규정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공전」의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 중 영양보충용 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이 있다(건강보조식품은 스쿠알렌식품 등 24 가지 제품이 지정되어 있으며, 영양보충용식품은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 지방산 등을 보충하여 기준·규격에 맞게 제조·가공한 제품을 포함시키고 있음).

우리나라의 건강보조식품은 일본의 건강보조식품협회에서 운영하는 품질인증제도에 따라 인정된 '건강식품'을 주로 반영한 것으로



서, ‘건강식품’ 과는 별도로 일본 후생성에 개별허가하는 제품인 ‘특정보건용식품(기능성 식품)’ 및 미국의 ‘식이보조제’를 대부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식품의 기능성을 인정하는 식품의 범위는 매우 좁은 실정이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용성 표시는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品类에 대하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조사가

이들 제품에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 광고사전심의 운영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 1997-9호, 1997. 2. 17)에 따라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 중 영양보충용식품에 대해서

는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에서, 영양보충용식품을 제외한 특수영양식품에 대해서는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광고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때에 행해지는 사전광고심의는 학계·소비자단체·공무원·업계 등 10인 이내로 된 심의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과학적·체계적인 평가방법에 의해 기능성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적인 효능·효과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허용 가능한 범위와 허용가능하지 않은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실제로 적용할 때에 어려움이 있으며,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 이외에 가능성을 가진 이른바 기능성 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가 전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불법적인 과대광고와 표시가 성행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5. 건강기능식품의 향후 관리방안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먹거리의 안전성과 건전성에 대한 요구의 증가로 기능성 식품의 수요가 점차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적합하게 건강기능식품을 분류하고 각 분류에 따른 유용성 및 안전성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과학적인 국가관리를 도모하고 제품화 및 품질관리 개발을 지원하여 국내 건강기능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단일성분에 의한 단기간의 임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의약품과는 달리 여러가지 영양소, 성분들이 함께 함유되어 있으므로 영양성분 간 또는 식품성분 간 상호작용이 매우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들을 혼합·추출하거나 정제하여 만든 제품 등은 대사, 생체이용률 등에서

화학적·물리적 변화를 거쳐 본래의 유익한 성질 및 기능성이 변질될 수도 있으므로 식품에서 특정 기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식품은 의약품과는 구별되게 관리되어야 하므로 기능성 식품에 사용되는 인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미치는 효과,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 등 건강에 유익한 다양한 효과는 질병의 진단, 치치, 치료, 완화 등의 의약품적인 효능·효과와 구분되어야 한다.

어떠한 단일연구도 식이-질병과의 상관성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과학적 절차 및 원칙하에 올바르게 디자인된 연구로부터 유래된 것이어야 하며, 화학적 분석, 동물실험, 임상실험 및 관찰 연구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접근방법들의 검증 및 종합을 통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능성 식품의 기능성은 과학적인 근거의 총체성에 기초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동 근거의 기준설정을 위한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능성 식품의 안전성 평가는 기능성 평가와 병행되어야 하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 예를들면 일일평균섭취량의 증가에 따른 유해 물질의 섭취증가 등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능성 식품의 원료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방법 및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능성 식품은 일반 식품과는 달리 소비자의 기능성에 대한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섭취하는 것이므로 기능성 이외

어려운 설정이고 위생성, 안전성 등에서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식품산업의 공정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제조·가공기준 등 기능성 식품의 품질평가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단일연구도 식이-질병과의 상관성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과학적 절차 및 원칙하에 올바르게 디자인된 연구로부터 유래된 것이어야 하며



도 품질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내 식품업체의 85%이상이 영세한 현실에서 정제·캡슐형태의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한 품질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과 과학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아울러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 인정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강기능성 식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며,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한 유용성·안전성 평가로 국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